

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 
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의안 번호	2336
----------	------

2021년 4월 26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제30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21년 4월 26일 상정, 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최윤중 푸른도시국장]

### 가. 제안이유

- 조례의 근거법령이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21. 6. 10. 시행)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근거법령에서 인용하는 각종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골자

- 1) 조례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(안 제명).
- 2)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법령의 제명 및 조항, 용어를 변경함(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, 제12조 및 제17조).
- 3) 근거법령의 제정('21. 6. 10. 시행)에 맞추어 조례를 시행함(안 부칙 제1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2) 입법예고('21. 1. 21.~2. 10.)결과: 의견없음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[수석전문위원 : 이재효]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근거법령에서 인용하는 각종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동 조례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산림자원법’) 제20조의2에 따라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<sup>1)</sup>.
-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) 및 제20조의2(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)<sup>2)</sup>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,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지난해 관련법으로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도시숲법’)이 제정되어<sup>3)</sup> 동 조례가 근거로 하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제20조의2는 삭제되고, 관련사항은 ‘도시숲법’ 제11조와 제13조로 규정되었으며, 오는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.
-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조례제명 및 근거법령에서 인용하는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음.

1)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(의안번호 10-01576, 원안가결) - 제출일(2020.5.25.), 의결일(2020.6.30.), 공포일(2020.7.16.)

2)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[시행 2017.6.3] [법률 제14360호, 2016.12.2. , 일부개정]

3)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[시행 2021.6.10.] [법률 제17420호, 2020.6.9. , 제정]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”를 “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”로, “도시림등”을 “도시숲등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도시림”이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호”를 ““도시숲”이란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생활림”이란 법 제2조제5호”를 ““생활숲”이란 법 제2조제2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 제2조제6호”를 “법 제2조제3호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도시림·생활림·가로수(이하 “도시림등”이라 한다)”를 “도시숲·생활숲·가로수(이하 “도시숲등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0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13조제1항”으로, “도시림등”을 “도시숲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법 제20조”를 “법 제6조”로, “도시림등”을 “도시숲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를 “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도시림등”을 “도시숲등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각 “도시림”을 “도시숲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도시림등”을 “도시숲등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단서 중 “도시림”을 “도시숲”으로 한다.

제17조 후단 중 “도시림”을 각각 “도시숲”으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